

#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51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6.

제 출 자 : 홍진옥 의원, 이재문의원,  
이호영 의원, 최근배 의원, 김현식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충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돋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7조 ~안 제8조)
-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(2013. 5. 9. ~ 5. 29) 결과 : 의견있음.(따로붙임)
- 조례안 : 따로 붙임
-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##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충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돋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문화관광해설사"란 충주시(이하 "시"라 한다)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,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관광자원(이하 "관광자원"이라 한다)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제4조(직무)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
  2.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
  3.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
  4. 시의 관광홍보대사 역할
-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.

제5조(책무) ① 충주시장(이하 "시장"라 한다)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-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, 해설서비스 수요, 관광자원 보유 현황, 해설인

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.

제6조(운영 지원)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교통비,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
2. 해설 직무 시 착용하는 근무복 구입비
3.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
4. 해설사의 쾌적한 근무 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제7조(해설운영 등)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연중무휴로 한다. 다만,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. 다만,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을 조정(교대 근무 등)할 수 있다.

③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수는 매월 20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겨울 철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(ID카드를 말한다)을 소지해야 한다.

제8조(활동비 지급 등)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중식비, 교통비를 포함하여 최저 50,000원으로 한다. 다만,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·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「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제9조(심화교육)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사기양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□ 관광진흥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2. "문화관광해설사"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,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

제48조의4(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·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,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,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·배치·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

제48조의6(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) 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(開設)·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(認證)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·교육과목·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, 인증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48조의8(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관광 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,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,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## □ 관광진흥법 시행규칙

제57조의2(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신청절차 등) ①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3서식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 신청서에 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한국관광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5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④ 한국관광공사는 제3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리고,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의4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⑤ 한국관광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한국관광공사는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5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57조의4(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표시) 법 제48조의6 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별표 17의3과 같다.

제57조의5(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, 평가 일시 및 장소, 응시원서 접수기간,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.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·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,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,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##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

(집행부 의견)

조례안	의견
제4조(직무)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3.(생략) <b>4. 시의 관광홍보대사 역할(신설)</b> ② (생략)	⇒ 관광의 최일선에서 관광객을 맞이하여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
제7조(해설운영 등) ① ~ ③(생략). ④ <u>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수는 매월 20일 이상으로 한다.</u> (삭제) ⑤(생략)	⇒ 활동일수는 해설사 제도개선 및 지원규모 축소로 <u>2013년은 월평균 11.6일</u>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. 해설사의 근무일은 관광객 현황 및 관광지 전반을 고려하여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, <u>근무일수를 20일 이상으로 정할 경우 시비 116백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</u> 하여 근무일수 조문 삭제 필요
제8조(활동비 지급 등)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중식비, 교통비를 포함하여 <u>최저 50,000원</u> 으로 한다. 다만,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② ~ ④ (생략) 수 있다.	⇒ 활동비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4만원으로 책정(진천5만원)하고 있고 국·도비 : 시비의 비율이 5:5에서 점차 국·도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<u>활동비를 5만원으로 인상하면 시비 40백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함</u> · <u>근무일수 20일과 연동하여 고려하면 2013년 예산에 180백만원의 시비가 추가소요 됨.</u> 따라서 <u>활동비는 최저4만원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u> 로 수정 필요

(충주전통문화회 의견)

조례안	의견
<p>제7조(해설운영 등) ① ~ ③(생략)</p> <p>④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수는 매월 20일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⇒ 근무일수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.</p>
<p>제8조(활동비 지급 등)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중식비, 교통비를 포함하여 <u>최저 50,000원</u>으로 한다. 다만,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⇒ 2013년 최저임금이 시급 4,860원으로 이를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상하면 일급이 34,020원임. 문화관광해설사는 단순업무를 하는 시급 근로자가 아니라 문화유산과 관광에 전문지식이 있음. 일급에는 전문가 수당이 플러스 되어야하므로 <u>최소 5만원은 되어야함</u>.</p> <p>시 재정이 허용되면 일급 34,020원에 전문가 수당을 매치펀드식으로 계산해 68,040원은 될 수 있어야 함.</p>